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안 -

#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37
------------	-----

2012년 6월 27일  
교 통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2월 3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2년 2월 3일

다. 상정일자

○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교통위원회(2012년 6월 27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통정책관 백 호)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택시 인프라를 개선하여 시민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유지시킴으로써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가 시민의 복리 증진에서 더 나아가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임을 밝힘(안 제1조)
- 조례의 적용범위를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으로 하고, 조례의 기본방향을 정하며 시장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시민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 택시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하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 택시정책의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한 서울특별시 택시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택시정책위원회 및 주무부서는 택시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안 제15조)
-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안 제16조)

###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안석수)

#### 가. 개요

- 동 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택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택시 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택시 이용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유지시키는 한편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 의견

- 동 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택시 이용시민의 편의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이를 위해 동 조례안은 서울시 택시정책의 기본방향, 시장을 포함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무, 택시정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조사·연구,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간 협력체계 구축 및 택시정책위원회 운영,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동 조례안은 서울시가 2011년 7월 20일 택시서비스의 획기적 개선과 경영체계 개편을 위해 중장기 개선대책 방안으로 발표한<sup>1)</sup> “서울 택시개혁 종합대책”의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위임 범위 내에서 서울시 택시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재규정하고 있음

1) 서울시 보도자료(2011.7.2), “시민에게 사랑받는 세계적인 서울택시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 택시개혁 종합대책 마련” 참고

이러한 사항들은 서울시의 택시개혁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및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서울 택시개혁 종합대책의 6대 중점과제별 36개 추진과제

분 야	추진과제
1. 종사자 처우개선과 수준 향상	①운수종사자 임금체계 개선, ②운수종사자 인력 수급관리 지원, ③운수종사자 교육개선, ④택시 운전자격제도 개선, ⑤운수종사자 복지지원 확대
2.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①택시 안전강화와 안심귀가서비스 확대, ②택시유형·서비스 다양화, ③불법택시 단속강화·시스템 개선, ④택시 승차거부 근절, ⑤택시운전자 안전·운전능력 강화, ⑥택시서비스 평가 강화, ⑦브랜드콜택시 이용 활성화
3.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①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②택시 이용문화 개선, ③해치택시 디자인 개선과 보급 확대, ④외국인관광택시 운영 개선과 활성화, ⑤택시운전자 복장 개선
4. 택시산업 활성화와 경영합리화	①택시총량제 시행과 수급관리, ②전액관리제 정착 및 경영 투명성 제고, ③택시 요금체계 다양화 등 요금제도 개선, ④개인택시 제도·운영 개선, ⑤택시카드 이용 활성화, ⑥택시업체 대형화 유도, ⑦택시업체 경영지원 강화
5. 인프라 확충과 환경 개선	①공공형 택시 설립·운영, ②친환경 전기택시 보급 확대와 연료 다변화, ③공동 차고지 확보 지원, ④수도권 택시 통합운영 추진, ⑤택시승차대 운영 개선, ⑥택시타워 건립 추진
6. 추진체계 효율화와 역량 강화	①택시전담기구(서울택시센터) 설치, ②택시관리시스템 구축, ③택시관련 법령정비 등 제도적 기반 강화, ④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추진역량 증대, ⑤스마트 택시 네트워크 구축, ⑥시민소통과 체감도 향상

○ 그러나 동 조례안은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택시 정책들 중에서 서울시가 추진하기를 원하는 정책들의 나열에 그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단순히 선언적 의미만을 갖는다는 지적도 있음<sup>2)</sup>

일례로 개인택시조합 및 법인택시조합은 택시 감차 추진 및 감차보상 방안을 규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sup>3)</sup> 따라 택시 수송력 공급계획(일명 “택시 총량제”) 및 감차계획을 수

2) 시장제출안에 포함된 동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서 참고  
 3) 제5조(면허 등의 기준) ③ 제2항에 따라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5년마다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sup>4)</sup> 기 수립된 동 계획의 실행방안을 전혀 규정하지 않아 택시부문에 대한 시의 정책의지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택시업계의 제출 의견 중 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 등 동 조례 상에 규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규정 마련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한편 택시 관련 조합 등은 택시업계의 경영개선 및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지원방안을 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동 조례의 제정 취지가 그간 산발적으로 추진되어온 택시정책을 제도화하고 택시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합에서 제시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동 기본조례 내에 규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다만 동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택시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에게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향후 택시업계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지원소요가 발생할 경우 동 규정을 근거로 재정지원을 해도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4) 택시 총량제 용역결과 서울시는 현재 72,280대의 택시 중에서 장기적으로 2,280대를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기본방향)** ① 택시정책은 택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택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택시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한다.

②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택시 서비스의 개선과 택시업계 경영 합리화를 우선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③ 택시 활성화 기반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택시개혁을 통하여 서울형 택시 모델을 만들어 택시정책을 선도한다.

④ 택시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이해당사자, 관계 전문가 등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택시 운송사업자는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운수종사자 안정적인 수급 지원,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복지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정착,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6조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준수사항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제6(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쾌적하고 친절한 택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택시 이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제7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종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현 택시산업의 실태 및 문제점
3. 기존 택시정책의 추진실적 평가
4.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6.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택시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 등을 하기 위하여 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② 시장은 택시 운영·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한 택시 운행실태 분석 및 택시정책의 평가와 당사자 의견 수렴 등을 위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기업,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택시 실태와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이용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택시정책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자

2.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시의원

3. 교통업무 소관 본부장, 국장

②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업무의 협조)** ① 주무부서는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택시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표창)**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운수종사자, 시민,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에 필요한 다른 규정은 「서울특별시 표창조례」를 따른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택시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된 서울 택시개혁 종합대책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계획으로 본다.